

의안번호	2216254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6.2.6.
추 계 번호	26E03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,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
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
1	안 제91조의26(기업 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)	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(요건) 전용계좌(1인 1계좌, 한도 2억원)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펀드)에 투자할 것 (배당소득 분리과세) 2028.12.31.까지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% 세율의 분리과세 적용															
2	안 제91조의27(국민 참여형 국민성장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)	-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(요건) 전용저축계좌(한도 2억원 이하)를 통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(펀드)에 투자할 것 (소득공제) 2030. 12. 31.까지 투자 시 투자금액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 공제 <table border="1"> <tr> <th>1명당 투자금액</th> <th>공제액</th> </tr> <tr> <td>3천만원 이하</td> <td>투자금액의 40%</td> </tr> <tr> <td>3천만원 초과</td> <td>1,200만원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하</td> <td>+ 3천만원 초과분의 20%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</td> <td>1,600만원</td> </tr> <tr> <td>7천만원 이하</td> <td>+ 5천만원 초과분의 10%</td> </tr> <tr> <td>7천만원 초과</td> <td>1,800만원</td> </tr> </table> (배당소득 분리과세)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% 세율의 분리과세 적용 (추징) 투자일부터 3년 내 펀드 양도·환매 시 다음 금액 추징 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: 양도·환매가액의 14% ②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경우: 감면세액 상당액	1명당 투자금액	공제액	3천만원 이하	투자금액의 40%	3천만원 초과	1,200만원	5천만원 이하	+ 3천만원 초과분의 20%	5천만원 초과	1,600만원	7천만원 이하	+ 5천만원 초과분의 10%	7천만원 초과	1,800만원	
1명당 투자금액	공제액																
3천만원 이하	투자금액의 40%																
3천만원 초과	1,200만원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+ 3천만원 초과분의 20%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	1,600만원																
7천만원 이하	+ 5천만원 초과분의 10%																
7천만원 초과	1,800만원															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1조의26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1조의27(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가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(안 제91조의26 신설)

□ 개정안은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기업성장펀드)에 투자함으로써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%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는 것으로,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기업성장펀드(Business Development Company, BDC)는 펀드 자산총액의 50% 이상을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·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로, 2026. 3.부터 근거법률이 시행될 예정임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)
 - － 만기 5년 이상 환매금지형 펀드로 운영하되 거래소에 상장해 환금성을 부여하고, 벤처투자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펀드자금을 이용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일반 펀드(집합투자기구)와 다른 규제가 적용됨
-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(분배금)에 대하여는 14%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, 개정안과 같이 9%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기업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업성장펀드에 투자한 인원 현황, 투자금 규모, 펀드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는 근거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기업성장펀드가 출시되지 않은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
나. 국민투자형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(안 제91조의27 신설 등)

-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계좌를 통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(국민성장펀드)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,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%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[표 2]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내용

구 분		과세특례	
요건		- ①,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용저축계좌를 통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자형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① 납입 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일 것 ②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할 것	
과 세 특 례	소득공제	- 펀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아래 표의 공제액 적용	
		1명당 투자금액	공제액
		3천만원 이하	투자금액의 100분의 40
		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1,200만원 + (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		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	1,600만원 + (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)
		7천만원 초과	1,800만원
	배당소득 분리과세	- 투자일부터 5년 이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%의 세율로 분리과세	
기타		- 투자일부터 3년 전 펀드 양도·환매 시 세제혜택 받은 세액 상당액 등 추정	

-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(밸류체인)에 투자함으로써 첨단산업경쟁력 강화,

벤처·기술기업의 스케일업,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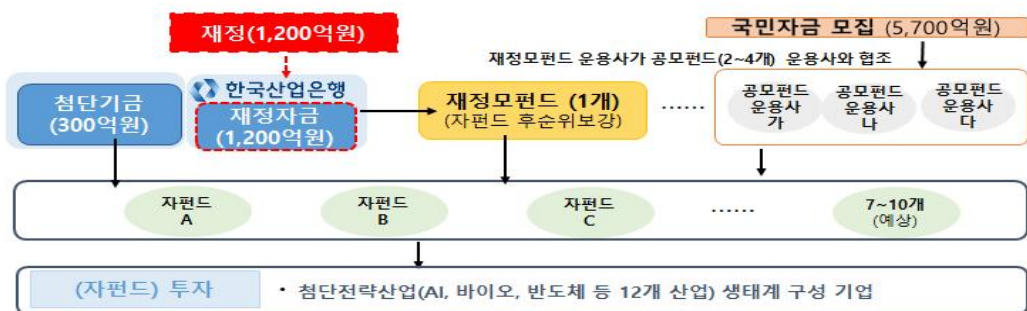
[표 4] 국민성장펀드 개요

구 분	주요 내용
설립 배경	- AI·바이오·로봇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 심화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 저하에 대응할 필요성 대두
설립 목적	- 첨단산업 관련 핵심 메가프로젝트를 선정·집중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
기대 효과	-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, 벤처·기술기업의 스케일업,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 (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기대)
구성 규모	-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(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+ 민간·국민·금융권 자금 75조원)
지원 방식	- 직접투자 15조원, 간접투자 35조원, 인프라투융자 50조원, 초저리대출 50조원
지원 분야	- AI,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·백신, 수소·연료전지, 항공우주·방산, 모빌리티, 원전, 미디어·콘텐츠, 로봇 등

-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간접투자방식 국민성장펀드의 세부 운영 방안으로,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성장 성과를 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이 자금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(사모재간접)공모펀드로 설계될 예정임

-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이 자금을 투자하면 펀드 운용사가 해당 자금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분산투자하고, 정부재정이 국민자금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임

[그림 1]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026년 사업구조도(안)



자료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「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」 T/F 회의 개최, 2026.1.28.

□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

계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 인원 및 해당 인원의 소득구간별 소득공제·납부세액 등 현황,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금 규모, 펀드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
-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중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상품구조를 확정·발표하고, 6월 전후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·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